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보도자료

[2013. 9. 5.]

재판연구관실

(공보관: 3480-1451)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변론 및 생중계방송 실시-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13. 9. 5. 14:00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소송 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였음
-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자 측 소송대리인과 사용자 측 소송대리인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근로자 측 참고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사용자 측 참고인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제된 통상임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음
-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통상임금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계속 시행할 계획임

1. 사건의 개요

가. 재판 개요

사건	원고 및 소송대리인	피고 및 소송대리인
대법원 2012다89399	○○○ - 김기덕 외	갑을오토텍 - 김&장
대법원 2012다94643	○○○ 외 294 - 김기덕 외	갑을오토텍 - 김&장

나. 사건의 내용

○ 사건의 개요

- ▶ 피고의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각 사건의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퇴직금(중간정산 부분 포함) 중 실제로 받지 못한 차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 소송 경과

사건	1심 판단	2심 판단	비고
2012다89399	원고 패소	원고 승소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 - 2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2012다94643	원고들 일부 승소	원고들 일부 승소	-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 - 2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감축이 있었고, 1심 및 2심 모두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2. 사건의 쟁점

가. 쟁점

- 일반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노사합의 등의 평가

나. 통상임금의 기능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만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퇴직 전 일정 기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3. 이 사건 공개변론의 진행과 내용

가. 개요

- 이날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절차로 진행되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으로 구성됨. 대법관 13인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직위에 있는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함

- 양측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출석하였음

사건	원고 및 소송대리인(5)	피고 및 소송대리인(5)
2012다 89399	김상은, 김기덕, 육대웅(법 들풀), 송영섭(법 여는), 강호민(법 함께) 변호사	김용상, 이제호, 이현종 홍준호, 이도형 변호사(이상 김&장)

2012다 94643	김상은, 김기덕, 육대웅(법 들풀), 송영섭(법 여는), 강호민(법 함께) 변호사	김용상, 이제호, 이현종 홍준호, 이도형 변호사(이상 김&장)
----------------	--	---------------------------------------

- 참고인들로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원고 측)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피고 측)가 참석하였음

나. 변론 진행에 대한 설명

- 이날 재판은 14:00 양승태 대법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음
-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공개변론에 앞서 소송관계인들과 방청객들에게 먼저 공개변론과 재판 중계방송의 취지, 사건의 쟁점, 절차의 개요 등을 설명하였음

다. 양측 소송대리인들의 변론

(1)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변론(이제호 변호사)

- 이 사건의 경위
 - ▶ 피고는 근로관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왔고,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으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
 - ▶ 그럼에도, 원고 측은 이러한 합의와 신뢰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였음
- 통상임금의 개념
 -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개월 내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임. 이는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도구의 개념임
 -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

금의 70% 수준일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임금 구조가 왜곡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반면, 원고 측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70%를 초과함

○ 통상임금의 요건

- ▶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함
- ▶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음. 즉,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 ▶ 사전에 미리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판례의 주류적 입장도 근무성적 등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따라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여금의 성격

- ▶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보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임
- ▶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

○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

- ▶ 그동안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합의해 왔음.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타당성, 합리성이 있는 경우 달리 볼 수 있음. 과거와는 달리 노사자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그 합의를 존중해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협의한 것임
- ▶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참작하여야 함

(2)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김기덕 변호사)

○ 근로기준법의 취지

-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 그럼에도, 과도한 근로시간이 문제 되고 있음

○ 통상임금의 문제

- ▶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모든 임금을 포함함
- ▶ 따라서 나중에 근무일수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원래 지급이 예정된 것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
- ▶ 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음
- ▶ 그리고 관례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성이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이유로 부당함

○ 노사합의의 효력

- ▶ 피고 측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함
- ▶ 만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하였을 것임
- ▶ 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함

라.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

(1) 피고 측 참고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1임금 산정기간(1개월)에 지급되는 것임
- 그러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 그리고 임금 항목이나 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노사합의는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음

(2) 원고 측 참고인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예정된 돈으로 해석하여야 함
- 정기상여금은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됨
- 1임금 산정기간 즉, 1개월을 한도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이는 연봉제를 보면 알 수 있음

마. 질문과 답변

- 소송대리인들의 모두 변론, 참고인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음
- 양승태 대법원장,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주심 대법관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 등의 순서로 원고 측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과 참고인들에게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양승태 대법원장
 - ▶ (피고 측에 대한 질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피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고용 승계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님. 오히려 초과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음. 즉,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장담하지 못함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통상임금 확대의 효과가 정규직에게만 미쳐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통상임금의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는 일임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지 못함. 최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포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양창수 대법관

- ▶ (피고 측에 대한 질문) 통상임금이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 (피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월급제의 경우 1개월에 1회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이며, 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임. 마찬가지로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다른 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움
- ▶ (피고 측에 대한 질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수학적으로 1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 (피고 측 소송대리인) 통상임금을 계량척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계량척에 들어가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즉 급여의 성격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 (피고 측에 대한 질문) 통상적 수당과 상여금은 어떤 점이 다른가?
- ▶ (피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장려, 공로

보상,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임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피고 측 주장 경제적 파급 효과 주장에 동의하는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어느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음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초과근로가 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실 태에 들어맞는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그러함.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그러함

○ 신영철 대법관

- ▶ (피고 측에 대한 질문) 노사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 ▶ (피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음. 과거부터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협의해 왔지, 개별 임금 항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

○ 고영한 대법관

- ▶ (원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상여금은 원래 월정수당과는 다른 성격의 급여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가?
- ▶ (원고 측 참고인 답변) 현재 정기 상여금은 기본급화 되어 있어 원래 상여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음.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김소영 대법관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는 종래부터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왔음에도, 이를 단체협약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가 있는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과거 유사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원고 측에 대한 질문) 피고 측은 문제 된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 중 대부분을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결과, 개근한 근로자가 결근 등을 한 근로자와 비교할 때 지급으로는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위 급여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은가?

- ▶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답변)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이 예정된 금액이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민일영 대법관

- ▶ (원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의 위임이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한 것이 문제라면 비슷한 형식으로 된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도 무효라는 것인지, 원래 시행령에서 법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 ▶ (원고 측 참고인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법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임 없이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시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즉, 근로기준법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임.
- ▶ (원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에 아예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 ▶ (원고 측 참고인 답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임

○ 박병대 대법관

- ▶ (원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원고 측 주장 취지는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등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에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점이 이 사건의 목표 내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즉,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억제 수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 ▶ (원고 측 참고인 답변)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피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1임금 산정기간을 벗어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정기상여금은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주기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지 지급주기가 2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 ▶ (피고 측 참고인 답변) 통상임금의 문제는 실질적인 근로 가치의 평가가 아니라 법정수당 등의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명확한 계산 기준을 정하는 문제임. 1 임금 산정기간의 개념은 입법자의 판단임

○ 김창석 대법관

- ▶ (피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봉제 등 임금 지급주기 자체가 다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 (피고 측 참가인 답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연봉제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봄
- ▶ (피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1임금 산정기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통상임금을 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큰 대기업과는 현실이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호 방안은 어떠한가?
- ▶ (피고 측 참고인 답변) 중소기업은 이미 고정적 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 그리고 임금 구성, 지급 방식 등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영역임. 대신,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 됨.
- ▶ (원고 측 참고인에 대한 질문) 만일 2년 단위의 기간마다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가?
- ▶ (원고 측 참고인 답변)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아닐 것임

바. 마무리 변론

(1)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마무리 변론(김용상 변호사)

○

(2)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마무리 변론(김상은 변호사)

○

사. 변론 종결 및 폐정

- 마무리 변론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의 선고기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여 알리겠다고 설명하였음
- 대법원은 이로써 약 3시간 25분에 걸친 공개변론을 모두 마쳤음

4. 추후 일정과 재판중계의 의미

가. 추후 일정

-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됨
- 그에 맞추어, 대법원은 판결의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함

나. 재판중계의 의미

-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하여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되었음
- 대법원은 이번 중계방송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적절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할 계획임